

2018년도 제2회 인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제2회 인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4. 16.

인제군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1·2차 시험 병합실시)	시험시간
		소계	4명		
9급	공업	일반기계	1명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60분
9급	시설	일반토목	3명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60분

2 시험절차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홈페이지 공고 : 2018. 04. 16. ~ 04. 29(13일간)
- 응시원서 접수 : 2018. 04. 30. ~ 05. 02(3일간)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
※ 거주제한 등 자격요건 심사

2차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시험과목 : 과목당 100점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1차·2차 시험 병합실시)

3차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응시자격

○ 연령 : 만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거주지 제한 : ①번과 ②번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2018년 4월 16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제군 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2018년 4월 16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 (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제군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자격증 제한(1개 이상 소지,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해야함)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기능사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치공구(治工具) 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퀘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시설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4. 30(월) ~ 5. 2(수) 09:00~18:00	필기시험	5. 4(금)	5. 26(토)	5. 30(수)
	면 접	5. 30(수)	6. 4(월)	6. 5(화)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4. 30 ~ 5. 2 (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인재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공무원채용담당자 ☎ 033-460-2021)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접수장소 교부 및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인제군수입증지 부착(판매처: 인제군청 1층 농협출장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② 이력서(사진 첨부) 1부.
-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1부.
- ④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 ⑤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⑥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⑦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후 접수 시 제시)

6 가 산 특 전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공통 적용 가산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직류)별 가산점	자격증 제한으로 해당사항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①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법률에서 정한 각 과목별 만점의 가산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과목별 만점의 40%미만 득점 시 가점 미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② 의사상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의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위 ①호와 ②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가산선택 하여야 합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 상담센터 1577-0606), 지방보훈지청, 의사상자 등 대상여부는 보건복지부 서비스지원과(044-202- 3258)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중전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업 지원대상자” 에게 부여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인재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시험 종료 후(최종 면접시험)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시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결격사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규를 적용합니다.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제3호)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인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033-460-20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나는 ① 제2018년 제2회 인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인제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수입증지 첨부란	②주 소							③전 화 : 핸드폰 :	
5급(연구관·지도관) : 1만원 6·7급(연구관·지도관) : 7천원 8·9급 : 5천원	④경 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종사) 년 월 일까지							
	⑤선 택 과 목	선택1	선택 2	선택3	⑥ 가 산 기표란	자격1	자격2	자격3	⑦취업보호 취업지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⑧응 시 계 급	급			⑩성명	(한 글)			⑫응시자 우무인
	⑨응 시 직 렬	(직)				(한 자)			
※응시 번호				⑪ 주민등록 번호					

간
인

⑬응 시 계 급	급	응시원서(부분)				⑱ 사 진 반명합판 (3.5cm×4.5cm)
⑭응 시 직 렬	(직)	⑮제 회	시험			
⑮성명	(한글)	(한자)				
※응시 번호		⑰ 주민등록 번호				

간
인

⑲응 시 계 급	급	응 시 표				⑳ 사 진 반명합판 (3.5cm×4.5cm)	
⑳응 시 직 렬	(직)	㉒제 회	시험				
㉑선 택 과 목	선택 1	선택2	선택3	㉓성 명			
※응시 번호					㉔주민등록 번호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응시원서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 ⑮, ㉓…당해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⑩, ⑯, ㉔… 정자로 기재하되, ⑩, ⑯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②… 현재 거주하는 곳(번지, 통, 반 명기)을 기재할 것.
4. 경력 ④…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5. 선택과목 ⑤…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개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시된 선택순서 표기에 따를 것.
6. 가산기표란 ⑥⑦… 6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시행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 및 시행기관을 기재하거나 취업보호대상자의 해당표시(√표)를 할 것.
 ※ √표 대상자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7. 응시계급 ⑧, ⑬, ⑲…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9. 응시직렬 ⑨, ⑭, ㉕…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안에는 당해 직렬중 직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직류까지 명기할 것.
10.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1. 사진란 ⑱, ㉖…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탈모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첨부할 것.
12. 우무인 ㉗… 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찍지 말 것.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 및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구만을 지참(휴대폰 등 지참불가)하여야 한다. 4. 시험당일은 매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한 색의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실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은 일체 금하며, 일단 입실한 자는 당해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한다.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p>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인제군 공무원 임용시험 자료로 활용</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등</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인제군 공무원 임용시험 자료로 활용</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면허·자격번호 등</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p>
<p><input type="checkbox"/> 동의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 . .</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2018. . .</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 (인)</p>

인제군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18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